

# 『東洋學』 편집심사 규정

2010.05.20. 전면 개정  
2014.03.05. 부분 개정  
2015.10.06. 부분 개정  
2017.04.01. 부분 개정  
2019.04.01. 부분 개정  
2020.01.08. 부분 개정

## 제 1 장 편집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이하 ‘본 연구원’라고 한다.)의 전문 학술지 『東洋學』(영문명 : *The Oriental Studies*)의 간행에 따른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논문 심사를 위한 제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임무) 편집위원회는 『東洋學』에 게재할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 선정에서 심사의뢰와 심사결과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집행하고 결정한다.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원 연구위원회의 추천과 인준을 받아, 원장이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이 인정되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는 국내외 교수 또는 학자로 구성한다. (2017.04.01. 개정)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편집위원회는 국내외 동양학 관련 전공 학자를 위주로 국내외 저명학자 10~15명을 전공별, 지역별로 적절히 안배하여 위촉 구성하되, 본 연구원의 편찬실장, 연구실장, 번역실장은 당연직편집위원으로 한다. (2017.04.01. 개정)
3. (2014.03.05. 삭제)
4. 단국대학교 소속의 편집위원이 전체 편집위원 중 2/3 이하이어야 한다. (2014.03.05. 신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이외에 실무를 담당할 편집간사를 둔다. (2014.03.05. 개정)

제4조(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14.03.05. 개정)

제5조(의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편집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2014.03.05. 개정)

제6조(소집)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소위원회’를 소집한다.

1. 『東洋學』 간행에 관련하여 『東洋學』 논문투고 마감 후 투고된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을 추천할 편집

위원을 배정하기 위해 '편집소위원회'를 소집한다. (2020.01.08. 개정)

2. 심사위원 추천 이후 『東洋學』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020.01.08. 개정)

3. 『東洋學』 투고 논문 심사결과 판정과 관련하여 『東洋學』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020.01.08. 개정)

4. 그 밖에 『東洋學』 관련 규정의 개정, 『東洋學』 간행과 관련한 긴급한 안건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20.01.08. 개정)

제7조(위임) 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고 회의전반의 권한을 편집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4.03.05. 신설)

제8조 편집위원의 논문을 한 호에 2편 이상 게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5.10.06. 개정)

제9조 심사와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책임 아래 대외비로 한다.

## 제2장 심사 및 판정

제10조(예비심) 편집간사는 간행일로부터 9주전 금요일(14:00)까지 투고 접수된 원고를 모두 수합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편집위원 3명과 함께 '편집소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적으로 예비심을 진행한다. (2014.03.05. 개정)

2. 논문투고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 '편집소위원회'는 심사를 보류하거나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위촉)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학자로 심사위원의 수락을 얻어 3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2조(구성) 심사위원은 교내 1명, 외부 2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 교수 중 해당 전공 분야 심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외부 3명으로 한다.

제13조(심사기간) 투고 논문의 심사기간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선정 위촉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014.03.05. 개정)

제14조(심사기준)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과 각 항목당 배점은 다음과 같다.

- ① 논제가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15점 만점)
- ② 글의 구성(목차)이 논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논증하도록 짜여 있는가?(15점 만점)
- ③ 논제를 구성하는 개념어들이 충분히 설명되고 일관되게 사용되었는가?(15점 만점)
- ④ 논문에서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15점 만점)

- ⑤ 결론이 창의적이며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가?(15점 만점)
- ⑥ 각주와 참고문헌의 선명성 : 각주와 참고문헌에 제시된 내용이 기존 연구 성과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으며, 논제와 적절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15점 만점)
- ⑦ 초록 작성의 일관성 : 국문초록이 적절한 분량으로 요약되어 논문 전체의 논제와 논증을 반영하고 있으며, 영문(외국어)초록과 내용이 일치하는가?(10점 만점)

제15조(결과판정)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를 완료한 후, ‘투고논문 심사결과서’(별첨)와 ‘투고논문 지적/수정 사항’(별첨)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각 해당 논문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은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에 관한 심사위원 3명의 심사결과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대해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판정을 한다.

점 수	판 정	비 고
80.0점 이상	게재 확정	
60.0~79.9점	수정 후 재심사	제16조 4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차기 호에 게재함
59.9점 이하	게재 불가	동일 필자의 이후 유사 내용의 논문 투고를 불허함

2. 심사위원 3명의 심사결과 중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의 차이가 40.0점 이상이고 그로인해 게재여부가 좌우되는 경우, 낮은 점수 심사결과에 대해 심사위원 1명을 교체 위촉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014.03.05. 개정)

제16조(조치)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에 대해 심사위원을 모두 익명으로 처리한 후, 논문 투고자 각 개인에게 송부할 ‘논문심사 결과통보서’(별첨)를 작성하여 본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2. 본 연구원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위의 ‘논문심사 결과통보서’를 편집간사를 통해 해당 투고논문의 집필자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 발송하고, 이와 함께 그 결과를 전화상으로 통보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의 수정 과정을 거쳐 다음 호 심사에서 예비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위원 3명의 재심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만약,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필자가 다음 호의 투고 기일까지 원고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2020.01.08. 개정)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다음 호에 재투고되어 재심사한 결과 ‘게재 확정’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하며, 만약 이전 결과와 동일하거나 더 낮게 나온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 처리한다. (2020.01.08. 개정)
5. 심사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지 않으며, 해당 논문의 ‘논문심사 결과통보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게재가 확정된 논문편수가 당초 계획된 게재 분량을 초과할 경우 심사 성적순으로 게재를 확정하고, 게재보류 논문은 차기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7. 최종결과 확정에 따른 게재 순서와 편집에 관한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원고 편집)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 교정 교열 및 편집 작업을 진행한다.

제18조(판권) (2019.04.01. 삭제)

부 칙 [2010.05.20.]

본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3.05.]

본 규정은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06.]

본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4.01.]

본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4.01.]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1.08.]

본 규정은 202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편집위원〉

위원장 : 이진식(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국어학)

위원 : 김옥성(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국현대시)

김용의(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문화학)

김우정(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본 연구원 편찬실장, 한국한문학)

김철웅(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본 연구원 연구실장, 한국중세사)

류보선(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국현대문학)

박상영(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한국고전문학)

배은한(단국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중국어학)

서정석(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고고학)

심재훈(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중국고대사)

윤재환(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국고전문학)

이 찬(한림대학교 인문학부 철학전공 교수, 동양철학사상)

전덕재(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국고대사)

편집간사 : 오대양(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전담조교수)